

2026 년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

2019 년 노동법 및 219/2025/NĐ-CP 시행령 기준



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(2019 년 노동법 제 151 조). 다만 , 법령은 **노동허가서 면제 대상**에 해당하는 여러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.



2025 년 8 월 7 일부터 , 219/2025/NĐ-CP 시행령이 152/2020 시행령을 대체하여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. DEDICA 는 이를 **21 개 면제 사유 체크리스트**로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함께 표시하여 기업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.

노동허가서 면제 21 개 사유 체크리스트

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나,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(2019년 노동법 제 154 조 및 219/2025/ND-CP 시행령 제 7 조).

번호	외국인 근로자 면제 사유	법적 근거
1	베트남 소재 국제기구 또는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사무소장, 프로젝트 책임자 또는 활동에 대한 주된 책임자	노동법 제 154 조 제 3 항; 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
2	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3 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	노동법 제 154 조 제 4 항
3	국내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·공학적 사고 또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3 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	노동법 제 154 조 제 5 항
4	베트남에서 변호사 개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	노동법 제 154 조 제 6 항
5	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경우	노동법 제 154 조 제 7 항; 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
6	베트남인과 혼인하여 베트남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	노동법 제 154 조 제 8 항
7	출자금액이 30 억 동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사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
8	출자금액이 30 억 동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
9	ODA 프로그램·사업을 위하여 전문·기술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행하고자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
10	외교부의 확인을 받아 언론 취재 활동을 하는 외국인 기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5 항
11	외국 권한기관의 파견으로, 외교공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거나 관리자·집행책임자로 근무하는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6 항

노동허가서 면제 21 개 사유 체크리스트

번호	외국인 근로자 면제 사유	법적 근거
12	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학생 · 연수생으로서 실습 약정 또는 채용 초청장이 있는 자 , 베트남 선박에서 실습하는 연수생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7 항
13	국제조약에 따라 근무가 허용된 , 베트남 주재 외국 대표기관 구성원의 가족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8 항
14	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국가기관 , 정치조직 또는 정치 · 사회 조직에서 근무하는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9 항
15	상업적 주재 (사무소) 설립 책임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0 항
16	국제조약 이행을 위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외교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확인을 받은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1 항
17	중앙 또는 성급 기관 · 단체가 체결한 국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2 항
18	관리자 , 집행이사 , 전문가 , 기술근로자로서 1 년 내 총 90 일 미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3 항 a 목
19	기업 내부 이동 (WTO 서비스 양허 11 개 분야 , 사전에 최소 12 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)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3 항 b 목
20	교육훈련부의 확인을 받아 국제 교육과정의 강의 · 연구 · 이전을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또는 교육기관의 관리자 ·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4 항
21	부 , 부급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금융 , 과학 , 기술 , 혁신 , 국가 디지털 전환 등 우선 분야에서 근무하는 자	219/2025 시행령 제 7 조 제 15 항



30 억 동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 : 출자금액이 30 억 동 미만인 소유자 · 출자사원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, 여전히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. 소유자 · 출자사원이면 당연히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.

문의하기

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나 지원해 드립니다.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.

기업 및 투자
형사 사건

상시 법률자문
인수합병 (M&A)

분쟁 해결
상표 및 저작권



주소

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171 번지 A&T 빌딩
11 층



이메일

david@dedica-law.com



전화

+84 39 969 0012



웹사이트

www.dedica-law.com



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
상담해 드립니다.